

##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안

의안 번호	455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1. 9.

제안자 : 산업경제위원장

### □ 제안이유

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여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함

### □ 주요골자

- 우수 농특산물의 생산자에게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(안 제1조)
-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농특산물의 품목, 신청대상자, 신청기간, 신청절차,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함 (안 제3조 및 제4조)
- 상표의 사용권 부여 및 취소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표관리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인 농정국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(안 제5조)
- 품질과 관련하여 상품의 변상, 반납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상표사용을 즉시 정지시켜야 함 (안 제7조 제2항)

-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음  
(안 제8조 제1항)
- 상표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사후관리의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 및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(안 제9조 제1항)
- 상표사용품목에 대하여 국내 전시판매의 우선권 부여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필요한 경우 홍보비를 지원할 수 있음  
(안 제9조 제4항)

##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수정 요구 사항

조 례 안	수 정 요 구 사 항
<p>제2조 제2호중 농특산물의 심볼 마크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<u>규칙</u>으로 정한다.</p>	<p>조례안중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현재 운영중인 예규(충청북도지사우수농특산품추천제운영지침, 98.3.31 제정)를 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를 요구함</p>
<p>제3조중 농특산물의 품목은 <u>규칙</u>으로 정한다.</p>	
<p>제4조 제2항중 신청대상자, 신청기간, 신청절차,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<u>규칙</u>으로 정한다.</p>	<p>○ 규칙으로 → 별도로          ※ 규칙뿐만 아니라 훈령 또는 예규로 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</p>
<p>제5조 제4항중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<u>규칙</u>으로 정한다.</p>	

##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내에서 우수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자에게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가 추천한 상품에 대하여 충청북도농특산물공동상표(이하 "상표"라 한다)의 사용권을 부여하여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농특산물" 이라 함은 충청북도내에서 생산되는 농·수·축·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.
2. "상표"라 함은 도지사가 추천한 농특산물의 심볼마크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3조(사용대상품목)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농특산물의 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4조(사용신청 및 절차 등) ①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·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상자, 신청기간, 신청절차,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상표관리심의위원회) ①상표의 사용권부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

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농특산물의 생산·가공·유통 및 소비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④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6조(사용권의 부여)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며,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.

제7조(상표사용의 정지) ①상표사용자는 농특산물의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도지사는 품질과 관련하여 상품의 변상, 반납 등 불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상표사용을 즉시 정지시켜야 한다.

제8조(사용권의 취소) ①도지사는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
2. 전업 또는 폐업 등으로 상표의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

- 3. 상표사용의 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
- 4.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
- 5. 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정 또는 보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을 취소 당한 자는 취소 당한 날부터 3년내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.

③제7조에 의한 상표사용의 정지 및 동조에 의한 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할 시장·군수를 경유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9조(사용권 부여품목의 사후관리) ①도지사는 상표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사후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②시장·군수는 상표사용자 및 부여품목에 대한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시·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도지사는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도지사는 상표사용품목에 대하여 국내외 전시관매의 우선권 부여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필요한 경우 홍보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제9조제3항의 규정은 도지사가 상표를 상표법에 의하여 상표권을 얻은 날부터 적용한다.